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8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나5814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272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정

담당변호사 안지선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백인화

변론 종결2022. 5. 12.

판결 선고2022. 6. 9.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2272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7,284,6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가액배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284,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가액배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4.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88,575,3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8,575,3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7. 1. 23. E을 흡수합병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이하 위 회사들의 각 상호와 무관하게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31. C에게 365,927,156원을 이자율 연 2%, 지연배상금 연 25%, 거치기간 24개월을 포함하여 대출기간을 총 60개월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C의 모친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4.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와 C, P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에 의해 특정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와 2016. 10. 20. 접수 제37294호로, 2016. 11. 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1. 1. 접수 제169070호로 각 2016. 4.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1.경 C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C를 상대로 잔여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12. 'C는 원고에게 386,507,474원 및 그중 365,927,156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 24.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814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지금까지도 원고의 채무 독촉 및 재판상 대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와 사이에 한 이 사건 협의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는 C의 오빠로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188,575,304원(=C의 상속분 317,713,385원 - 생전증여 89,080,000원 - 협의상속액 40,058,0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88,575,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는데, C와 C의 남편인 G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특별수익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아들로 망인을 비롯한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등 부양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기여분 협의에 해당할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재산 갑 제5, 14 내지 20호증, 제1심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Q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이 총 370,704,056원(= 부동산 405,246,971원 + 예금 110,957,085원 + L 보험금 4,500,000원 - 소극재산 15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부동산

이 사건 제1부동산	205,000,000	상속개시일과 근접한 2016. 6. 실거래가 참조
이 사건 제2부동산	183,000,000	상속개시일과 근접한 2017. 4. 실거래가 참조
경남 함안군 J 임야 84,632㎡ 중 6,448/85,289지분(이하 'J 임야'라고 한다)	4,408,449	2016. 1. 공시지가 689원/㎡ 참조
경남 함안군 K 임야 657㎡ 중 6,448/85,289지분(이하 'K 임야'라고 한다)	34,222	상동
광양시 R 임야 1,653㎡ 중 347/1,653지분(이하 '광양시 임야'라고 한다)	12,804,300	2016. 1. 공시지가 36,900원/㎡ 참조
계	405,246,971	

나) 예금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71,767,617
H은행(계좌번호 3 생략)	425,002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34,595,313
S조합(계좌번호 4 생략)	4,184
S조합(계좌번호 5 생략)	1,052,446
S조합(계좌번호 6 생략)	80,901
S조합(계좌번호 7 생략)	3,011,700
S조합(계좌번호 8 생략)	19,922
계	110,957,085

다) 보험금

L이 망인이 사망한 뒤인 2016. 4. 11. 망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보험금 4,500,000원

라) 소극재산(채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2010. 11. 23. 설정된 T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3) 특별수익 을 제1, 5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68,000,000원, C에게 89,580,000원을 증여하였고, 망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권의 수익자 또는 계약자를 C로 변경하여 C가 합계 52,181,010원 상당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013. 10. 30.	6,000,000
2013. 10. 30.	3,000,000
2014. 2. 6.	20,000,000
2014. 9. 26.	20,000,000
2016. 3. 31.	19,000,000
계	68,000,000

나) C

① 현금 89,580,000원

2012. 5. 7.	500,000
2014. 6. 27.	20,000,000
2014. 11. 19.	10,000,000
2015. 2. 26.	11,280,000
2015. 6. 2.	2,000,000
2015. 6. 18.	2,000,000
2015. 6. 29.	1,800,000
2015. 7. 1.	2,000,000

2012. 5. 7.	500,000
2015. 10. 22.	20,000,000
2016. 3. 3.	20,000,000
계	89,580,000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C의 남편 G에게 155,000,000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C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G에게 155,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회단3호 회생절차에서 망인의 G에 대한 회생채권 155,000,000원이 시인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달리 망인이 G에게 155,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보험금

U	2016. 3. 28.	2016. 5. 3.	29,959,000
L	2016. 3. 28.	2016. 5. 13.	18,788,600
V	2016. 4. 10.	2019. 10. 28.	3,433,410
계	52,181,010		

4) 피고의 기여분 인정 여부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C의 구체적 상속분 미달액 가)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370,704,056원 + 피고 특별수익 68,000,000원 + C 특별수익 141,761,010원(= 89,580,000원 + 52,181,010원) = 580,465,066원

나) C의 구체적 상속분: 상속분 193,488,355원(= 580,465,066원 × 1/3, 원 미만은 버림) -

특별수익 141,761,010원 = 51,727,345원

다) C의 구체적 상속분 미달액: 위 51,727,345원 - C가 상속한 J 및 K 임야 가액 4,442,671원 = 47,284,674원

6) 소결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 중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이 사건 협의는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47,284,6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를 47,284,67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7,284,6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인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유석동

판사김현주

판사임효빈

별지